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전자입찰)

1. 이 유의서는 각 세관에서 행하는 장치기간 경과물품 전자입찰(이하"체화공매전자입찰"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체화공매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인터넷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한다)의 이용신청을 하고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통관포탈"은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UNI-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http://unipass.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화공매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완료하고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검증 후에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통관포탈(http://unipass.customs.go.kr) 에 접속하여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개인의 경우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개인인증 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3.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4. 기타 위임 등에 의한 경우는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다. 공고별, 공매대상별, 공매번호별 입찰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각 세관에서 제시한 입찰자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자격을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허용합니다.

5. 통관포탈시스템 또는 체화공매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등을 통해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매각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나. 경쟁 입찰하여 낙찰되지 아니한 물품은 수의계약

다. 당회에 낙찰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차회에 계속 공매에 회부하고 재입찰공고는 생략합니다.

라. 수의계약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유찰된 것으로 합니다.(15항 참고)

마. 공매낙찰(계약) 후 낙찰 취소된 물품 또는 낙찰 무효된 물품은 유찰된 것으로 합니다. (10~14항 참고)

바. 낙찰자와 계약서 작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사. 공매시작일시 및 공매종료일시 : 입찰공고 시 정하는 지정시간

7. 응찰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매조건 이행사항 준수에 동의하여야 하며, 반출승인 전 공매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참여 등

가. 입찰은 본인(통관포탈서비스 이용승인 받은 자)이 직접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통관포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체화공매전자입찰서비스를 선택하여 체화공매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며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종료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체화공매전자입찰시스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보증금의 납부, 유찰자의 보증금 환불 및 낙찰자의 낙찰대금 납부는 입찰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해당 세관에서 지정한 세입세출관 계좌로 이체 완료되어야 하며, 계좌이체는 체화공매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BANKPAY 인터넷 결제서비스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 공매 종료 전까지 입찰과 동시에 입찰금액의 10/100(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에 입력하고 금융결제원의 BANKPAY 인터넷 경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입 시 자동으로 입찰서가 제출 처리 됩니다.

라. 체화공매전자입찰에 따른 중계수수료 등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유찰시 환불받을 계좌를 입찰보증금 납부 시와 동일한 계좌로 지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서에 입력한 보증금 금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지정한 계좌에 잔액(수수료 포함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입찰자가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하나의 공고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유찰자가 환불요청을 하면 입찰보증금은 입찰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환불계좌번호의 오류나 전산장애 등으로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가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아. 금융결제원의 BANKPAY 인터넷 결제 서비스에 의해 부과되는 입찰보증금 납부 및 환불 또는 낙찰대금 납부 등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9. 입찰준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시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2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낙찰 받고자 할 경우 동 요건구비를 위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의약품류(한약재포함) : 약국개설자, 시·도지사의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또는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등
2) 주류 : 주류수출입업면허증 등
3) 식품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증(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등
4) 먹는 샘물 :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 등
5) 유해물질 : 유독물취급허가증 등
6) 폐기물 관리법 대상물품 : 수입폐기물 재생, 이용 승인증 등
7) 담배류 : 담배판매업등록증 등

나. **상기 가호의** 물품 또는 그 이외의 통합공고상의 요건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낙찰자가 낙찰 후

요건구비 불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특정물품의 경우 체화전자입찰시스템에서 공매대상 물품의 이미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동 이미지는 실제 물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물건에 대하여 현품을 철저히 확인(공람)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응찰 후에는 당해물품의 규격, 수량, 성상, 내품의 누락, 개체기능상의 결함 등에 대하여 물품을 열람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매대상물품이 세관공매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자중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거나, 입찰경쟁에 참가할 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입찰하였을 경우

라. 공개경쟁입찰에 부당하게 가격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합 또는 부정입찰을 한 경우

마. 기타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

11. 낙찰자의 결정

가. 매각예정가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입찰 시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100씩 체감합니다.
(예정가격은 제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최초 예정가격으로 산출된 세액 이하로는 체감되지 않음)

나. 낙찰자의 결정은 공매번호별로 공매예정가격 이상을 기재한 입찰자 중에서 최고 금액을 기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스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계약이행 사항

가. 낙찰 시는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나. 낙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납부 고지되는 낙찰 잔금(총 입찰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공고된 납부기일 내에 체화공매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결제의 BANKPAY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물품은 낙찰대금 납부당일 출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사유로 물품의 부식, 손상, 분실,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특별법상 조건구비를 위해 물품을 보관 장소(보세구역)에서 일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때 에는 반출사유, 동일성 확인 등을 검토한 후 그 기간만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시 동의한 각종 법령에 의하여 검사, 추천, 형식승인 등의 공매조건 이행을 요하는 물품은 낙찰자 본인의 경비로 관련 조건을 이행한 후 그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건이행과 관련된 심사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이 조건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별표8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거 원산지를 해당물품 반출 전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 녹용, 녹각, 사향, 우황, 주사 등 고가수입 한약재 낙찰자는 공매낙찰대금 완납 후 10일 이내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를 필 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아. 위 **마호 내지 사호** 조건을 낙찰자가 이행치 않을시 낙찰포기로 간주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며, 그 사유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3. 낙찰의 취소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낙찰대금 잔액을 불입하지 않는 경우

나. 낙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매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특히 조건부 공매 시 유의사항에 주의)

다. 공매 낙찰 전에 당해물품이 수출, 반송 또는 수입 신고수리 된 경우

라. 착오로 인하여 예정가격, 공매조건 등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마. 기타 낙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세관에서 인정할 경우

14.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상기 1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낙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보증금은 국고 귀속 조치되며, 입찰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고, 그 사유는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13항 다호 내지 마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낙찰을 취소하거나 기타 낙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5.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2회 이상 경쟁 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단독 응찰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

나. **위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로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자는 공매공고상의 낙찰 잔금 납부기일 내에 낙찰 잔금을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며(별도 계약서 생략) 낙찰 잔금 기일 내에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물품에 대한 차회 이후의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낙찰자계약이행 사항 등 입찰준수사항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16. 부정당한 입찰자에 대한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당해 입찰의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관세청장의 별도 통보 시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7. 기 타

가. 공매집행에 있어 관계규정의 해석이나 집행절차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해당 세관의 해석에 의합니다.

나. 낙찰 잔금 납부 이후의 **공매조건 이행확인 및 낙찰물품 반출 등은 해당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물품에 대한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는 낙찰수량과 관계없이 공매조건을 이행해야 함

인 천 세 관 장